

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42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9. / 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2013년 12월31일 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「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개정 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의거 조문을 정비함.

주요내용

- 가.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(안 제4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, 동법시행령 제3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입법예고결과 : 붙임

- 입법예고 : 2013. 8. 7. ~ 8. 26. 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현행조례(전문)

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정의는” 을 “뜻은” 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시장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하고, “안산시” 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 로 하며, 같은조 제2항제1호 중 “안산시” 를 “시” 로 하고, “안산시외의” 를 “시 외의” 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9조제1호 중 “안산시” 를 “시” 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때에는” 을 “경우에는” 으로 하고, “범위 내에서” 를 “범위에 서” 로 한다.

제19조제2항제2호 중 “안산시” 를 “시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4조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과		복지정책과
임 안 자	실과장 직위·성명	복지정책과장 박 용 덕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자활지원계장 김 경 림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경 철 (행정 2368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뜻은
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 <u>시장은</u>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<u>안산시</u> 기초생활보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 ② (생략) 1. <u>안산시</u> 출연금 및 <u>안산시외의</u> 자로부터의 출연금 2.~5. (생략)	제3조(기금의 설치 및 조성) ① <u>안산시</u> 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..... <u>안산시</u> (이하 “시”라 한다) ② (현행과 같음) 1. 시 시 외의 2.~5. (현행과 같음)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 기한은 5년으로 한다.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	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9조(자활사업지원금 지원대상) 1. <u>안산시</u> 에 주소를 둔 자활사업참여자 2.~5. (생략)	제9조(자활사업지원금 지원대상) 1. 시 2.~5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)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율과 제11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율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. ②~③ (생략)	제12조(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) ①경우에는..... 범위에서..... ②~③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융자금의 상환 등) ①~② (생략) 1. (생략) 2. <u>안산시</u>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	제19조(융자금의 상환 등) ①~② (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시